

①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체포·감금범죄 / 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범죄의 경우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특가법상의 체포·감금범죄에 대하여, 유기·학대범죄의 경우 형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상 유기·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
- 원칙적으로 범행의 결과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되,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행위유형은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더 높은 형량 범위 설정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치사, 상습범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아동학대중상해 :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 상습범 : 해당 죄에 정한 형의 1/2 가중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 해당 죄에 정한 형의 1/2 가중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정 취지 및 법령 체계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를 '체포·감금', '유기·학대'와 별도의 독립된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아동학대범죄 관련 상습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여 각 유형에 적절히 반영

○ 주요 특징

- 체포·감금범죄 유형에서는, 1)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체포·감금 등), 2)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3)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4)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하되, 자발적 의사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등에는 형을 감경
- 유기·학대범죄 유형에서는, 1)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기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등), 3)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상습범의 경우 등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유형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과 신설된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엄정한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유기·학대범죄 유형과 대부분 동일하게 양형인자를 설정함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원칙에 따라 특별가중인자 개수가 특별감경인자 개수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② 약취·유인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 법률 변경의 주요 내용

1) 인신매매범죄 처벌범위 확대

- 개정 전에는 '추업 사용 목적 부녀매매', '국외이송 목적 사람매매'만 처벌
⇒ 형법 개정으로 '단순 인신매매'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래와 같이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 세분

-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목적 인신매매(형법 제289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형법 제289조 제3항)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형법 제289조 제4항)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약취·유인범죄 목적 내용 및 법정형 등 변경

- 개정 전에는 특별한 목적 없이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경우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추행, 간음, 영리 또는 국외이송 목적'이 있는 경우 형을 가중하며, '결혼 목적'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 ⇨ 형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목적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정비

-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목적 약취·유인(형법 제288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형법 제288조 제2항)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형법 제288조 제3항)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 피약취자 등에 대한 상해·치상, 살인·치사 규정 신설

- 형법 개정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치상, 살해·치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피약취자 등 상해(형법 제290조 제1항)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피약취자 등 치상(형법 제290조 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피약취자 등 살인(형법 제291조 제1항)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피약취자 등 치사(형법 제291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특가법상 가중처벌 규정 삭제

- 개정 전에는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에 의해 형법상의 '추행, 음행 또는 영리 목적 약취·유인', '추업 사용 목적 부녀매매',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또는 매매' 죄 등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 ⇨ 위 특가법 규정의 삭제로, 각 목적에 따라 위 1), 2)의 개정 형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이 대폭 하향됨

○ 양형기준 수정의 주요 내용

■ 양형기준 범죄군 명칭 변경 : 약취·유인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형법 제31장의 장(章) 명칭이 기존의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되었고, 형법 개정의 주된 취지가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에 있음을 고려

■ '약취·유인만 한 경우'의 대유형

- 기존 1유형 '단순 약취·유인'에 신설된 단순 인신매매 범죄 등을 포함
- 기존 2유형 '비난 목적 약취·유인'을, 법정형을 기준으로 목적에 따라 수정안

2, 3, 4유형과 같이 3개의 소유형으로 세분하고 형량범위에 차등을 둠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u>인신매매 등</u>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u>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u>	<u>8월 - 2년</u>	<u>1년 - 3년</u>	<u>2년6월 - 4년6월</u>
3	<u>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u>	<u>1년 - 2년6월</u>	<u>1년6월 - 3년6월</u>	<u>3년 - 5년</u>
4	<u>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u>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5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대유형

- 신설된 ‘피약취자 등 치상’, ‘피약취자 등 상해’ 범죄에 대하여 소유형 신설(수정안 1, 2유형)
- 기존에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해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있던 3개의 소유형(현행 1, 2, 3유형)을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등/인질상해·치상’의 하나의 유형(수정안 3유형)으로 통합하되, ‘비난할 만한 목적’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목적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기함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2	비난 목적 약취·유인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3	살해 목적 약취·유인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4년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u>피약취자 등 치상</u>	<u>1년 - 3년</u>	<u>2년 - 4년</u>	<u>3년 - 6년</u>
2	<u>피약취자 등 상해</u>	<u>1년6월 - 3년6월</u>	<u>3년 - 5년</u>	<u>4년 - 7년</u>
3	<u>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u>	<u>2년6월 - 4년</u>	<u>3년6월 - 6년</u>	<u>5년 - 8년</u>

■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대유형

- 신설된 ‘피약취자 등 치사’ 범죄에 대하여 소유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기존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유형과 구분되는 형량범위 설정
- ※ 피약취자 등 살해 범죄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어야 함

[현행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u>피약취자 등 치사</u>	<u>2년6월 - 5년</u>	<u>4년 - 7년</u>	<u>6년 - 9년</u>
2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③ 향후 일정

- 2014. 1. 24. ~ 2014. 2. 24.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희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희 실시 중 : 2014. 1. 10.~ 2. 10.)
- 2014. 2. 17.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당일 13:30 ~ 18:20)
- 2014. 3. 31.(월) 16시 : 양형위원회 제55차 전체회의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

I.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1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체포·감금범죄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보복목적 체포·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사	1년6월- 3년	2년 - 4년	3년 - 5년

2. 유기·학대범죄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2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2월 - 1년6월	6월 - 2년	10월 - 3년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사	1년6월- 3년	2년 - 4년	3년 - 5년

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유형별 적용법조 및 법정형

1. 체포·감금범죄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5년↓, 700만↓
	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10년↓, 1,500만↓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7년↓
	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2항	2년↑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2조 제2항	기본구성요건에 1/2 가중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1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3유형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8조	기본구성요건에 1/2 가중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9조	기본구성요건에 1/2 가중
	(상습, 누범, 특수) 체포·감금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	2년 ↑
	(상습특수, 누범특수) 체포·감금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2호, 제3조 제4항	3년 ↑
	(상습, 누범, 특수) 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	3년 ↑
	(상습특수, 누범특수) 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제3조 제4항	5년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체포·감금치상, 중체포·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치상, 특수중체포·감금치상, 상습체포·감금치상, 상습중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1년 ↑
존속체포·감금치상, 중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2년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3년 ↑
존속체포·감금치사, 중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무기, 5년 ↑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	특가법 제5조의9 제3항	무기, 3년 ↑

2. 유기 · 학대범죄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유기	형법 제271조 제1항	3년 ↓, 500만 ↓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2항	10년 ↓, 1,500만 ↓
	영아유기	형법 제272조	2년 ↓, 300만 ↓
	학대	형법 제273조 제1항	2년 ↓, 500만 ↓
	존속학대	형법 제273조 제2항	5년 ↓, 700만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중유기	형법 제271조 제3항	7년 ↓
	중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4항	2년 ↑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	5년 ↓, 3,000만 ↓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호	7년 ↓, 2,000만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학대	청소년보호법 제57조	5년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유기치상·중유기치상· 영아유기치상·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7년 ↓
존속유기치상·중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2항 전문	3년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유기치사·중유기치사· 영아유기치사·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3년 ↑
존속유기치사·중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무기, 5년 ↑

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5조	3년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4조	무기, 5년 ↑

3 주요 특징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의 ‘아동학대치사·중상해’를 체포·감금, 유기·학대와 별도의 독립된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행위유형은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더 높은 형량범위 설정

- **체포·감금범죄** 유형에서는, 1)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체포·감금 등), 2)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3)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4)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하되, 자발적 의사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등에는 형을 감경
한편, **체포·감금범죄**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와 결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유기·학대범죄** 유형에서는, 1)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기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등), 3)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상습범의 경우 등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과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형량범위를 설정

II. 약취·유인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1 법률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 형법 : 2000. 12. 13.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UN)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 및 그 부속의정서인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함. 또한 결과적 가중범을 신설하되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함
-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삭제: 약취·유인의 목적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함

2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수정 내용

■ 약취·유인만 한 경우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3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5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2	비난 목적 약취·유인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3	살해 목적 약취·유인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4년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3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변동 없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2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현행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3 유형별 적용법조 및 법정형

■ 약취·유인만 한 경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단순약취·유인·인신 매매등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10년↓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1항	7년↓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형법 제292조 제1항	7년↓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	형법 제292조 제2항	7년↓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1년 - 10년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2항	1년 - 10년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 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매 등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 적출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2년 - 15년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3항	2년 - 15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이송</u>	형법 제288조 제3항	2년 - 15년
	<u>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u>	형법 제289조 제3항	2년 - 15년
	<u>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u>	형법 제289조 제4항	2년 - 15년
	<u>매매된 사람을 국외이송</u>	형법 제289조 제4항	2년 - 15년
제4유형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무기, 5년 ↑
제5유형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해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사형, 무기, 7년 ↑

※ 신설 또는 변경된 구성요건을 파란색으로 표시(이하 동일함)

■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피약취자 등 치상	<u>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u>	형법 제290조 제2항	2년 - 20년
제2유형 피약취자 등 상해	<u>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u>	형법 제290조 제1항	3년 - 25년
제3유형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약취·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유기·가혹행위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무기, 5년 ↑
	인질상해·치상	형법 제324조의3	무기, 5년 ↑

■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재물 등 요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무기, 10년 ↑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2유형 재물 등 취득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무기, 10년 ↑

■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피약취자 등 치사	<u>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u>	형법 제291조 제2항	무기, 5년 ↑
제2유형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 질치사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사형, 무기, 7년 ↑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무기, 10년 ↑

III. 향후 일정

- 2014. 1. 24. ~ 2014. 2. 24.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2014. 2. 17.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당일 13:30 ~ 18:20)
- 2014. 3. 31.(월) 16시 : 양형위원회 제55차 전체회의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